

# 질병과 상해사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최 병 규\*

<차례> \_\_\_\_\_

I. 머리말	IV. 독일의 논의
II. A사의 분쟁사례	V. 분석과 평가
III.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VI. 맺음말

---

주제어 : 상해보험, 기왕증,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대퇴골골절, 말기신부전, 증명책임

<국문초록> 오늘날 민영보험은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부족분을 국민들이 임의적으로 민영보험을 활용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사회의 기술이 진보하고 복잡하여 짐에 따라 각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였다. 이에 상해보험이 매우 중요한 위험보장 역할을 담당한다. 상해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일부는 기왕질병이 사고와 결부되어 사망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이를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피보험자에게 사고 전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상해사고가 존재하여 양자가 경합한 상황에서 결국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고의면책의 경우 그 원인이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어야 면책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의 사고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원인이 반드시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것이라고 엄격하게 새겨서는 아니되고 상당인과관계로써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부분적으로 질병이 가미되어 중한 결과가 되었더라도 사고가 개입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 우연한 사고가 결과에 합리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면 상해사고로 인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과거에 기왕증 감액조항이 약관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 그 감액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글의 검토대상인 사안의 경우 피보험자는 말기신부전 환자였다. 그런데 대퇴골 골절을 당하여 치료를 받아가 결국은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왕질병과 상해가 경합하는 경우 보험자가 기왕질병의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것이 성공하면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본 사례의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퇴골 골절이 상당인과관계로서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인정할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논문접수일(2018.11.09), 심사개시일(2018.12.10), 게재확정일(2018.12.26)

수 있다. 상해사고에 해당 여부는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상해사고가 질병보다도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되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가 반드시 유일하거나 결정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성 여부는 계속하여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에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한 하급심도 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 그를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 I. 머리말

민영보험은 사회보험의 복지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sup>1)</sup> 민영보험 가운데 특히 최근에는 각종 사고위험이 높아져 상해보험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특히 기왕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상해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과연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해보험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요건으로 한다. 피보험자에게 사고 전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상해사고가 존재하여 양자가 경합한 상황에서 결국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기준에 질병이 있고 상해사고가 결합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과연 이를 상해사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의 사안이 분쟁 사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특히 A사의 분쟁사례를 기초로 하면서 기왕질병과 상해가 경합한 후에 사망한 경우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를 점검한다.

## II. A사의 분쟁사례

### 1. 쟁점

피보험자는 2017.06.16. 부엌에서 걷다가 넘어져 대퇴골 골절 진단 하에 2017.

1)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44쪽, 보험경영연구회, 「보험론」, 문영사, 2005, 58쪽.

06.19 우측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받고 상태 호전 중, 2017.07.01.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병사, 사망의 원인은 전장염 패혈성쇼크, 대퇴골 골절이 기재되어 있다. 2017.06.19. 수술시행 이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2017.06.22 퇴원하여 연세에덴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중, 열, 섬망, 설사 지속되어 2017.06.29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다. 피보험자는 딸기신부전 환자로서 약 10년 전부터 주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으며, 2017.05.30에는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을 받았고, 이외에도 극심한 불편증, 하지 불안증후군, 고혈압, 비루 동반된 만성 기침, 만성 부비동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사고 전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상해사고가 존재하나 수술 후 호전 중에 패혈성 쇼크로 사망을 하였는바, 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 2. 계약사항

당사자의 보험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종목	(무)X상해보험
보험기간	2004.04.02. ~ 2019.04.02
계약자/피보험자	P(49년생, 여) / P(49년생, 여)
적용담보	상해사망보험금 외 120,784,310원

## 3. 진행경위

그 동안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04.04.02 : 당해 보험가입
- 2017.05.03 : 뇌동맥류 결찰술
- 2017.06.16 : 대퇴골 골절
- 2017.06.19 : 우측 인공관절 반치환술 시행
- 2017.07.01 : 피보험자 사망

#### 4. 신청인 주장사항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원인(나)에 대퇴골 골절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해사망으로 보아 상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판례를 보면 “민사 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사회적·법적 의미의 인과관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견도 위와 같은 견지에서 보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 5. A사 보상부서 검토 의견

사망 전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것은 상해일반후유장해 약관에 해당이 되므로 상해일반후유장해 진단금 30%를 지급하는 것은 해당이 되나, 사고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Ⅲ.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와 판례

#### 1.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37조). 이러한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요건으로는 급격성, 우연성 및 외래성<sup>2)</sup>을 들 수 있다. 이때 사고와 상해 또는 사

2)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최근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다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8년 7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이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의 유가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A씨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이 포함된 중

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상해보험은 인보험으로서 무면허운전 음주 운전 중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을 하게 된다(상법 제732조의2).<sup>3)</sup>

### (1) 급격성

급격성은 사고가 돌발적으로 일어나 그로부터 상해라는 결과가 초래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없는 상태로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sup>4)</sup> 가령 넘어지거나 타인으로부터 구타 당하는 경우에는 급격성이 있다. 급격성은 우연성의 하나의 속성이라고 생각되어 급격성의 개념은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인정에서 그 영향력이 큰 것은 아니다.<sup>5)</sup> 달려가는 말을 세우려다 고삐를 잡아당김으로써 심장 부근의 혈관이 파열되어 사망한 사고는 상해사고이다.<sup>6)</sup>

### (2) 우연성

우연성 요건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원인인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게끔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sup>7)</sup> 상해보험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건물의 붕괴로 인한 육체적 피해는 상해에 해당한

---

합보험에 가입했다. 특별약관 가입금액은 1억원이었다. 보험 가입 3년 후 A씨는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졌다. 응급실로 실려간 그는 심폐소생술 등을 받은 결과 심장 박동을 회복했으나 사흘 뒤 가슴에 혈액이 고이는 혈흉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보험사가 A씨의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가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흉부 단순촬영에서 갈비뼈 골절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심폐소생술로 갈비뼈나 앞가슴뼈 골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출혈로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씨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신문 2018년 7월 31일자.

- 3) 이에 대하여는 송옥렬, 「상법강의」 제6판, 홍문사, 2016, 334쪽, 유주선, 「보험법」, 청목출판사, 2013, 431쪽 참조.
- 4) 채이식, 「상법강의(하)」, 개정판, 박영사, 2003, 617쪽.
- 5)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02, 633쪽.
- 6)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제9판, 삼영사, 2015, 355쪽.
- 7)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442쪽.

다.<sup>8)</sup> 피보험자의 어떤 큰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손해는 비록 그 커다란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판명되었다더라도 우연한 것으로 보게 된다.<sup>9)</sup>

### (3) 외래성

외래성 요건은 손해의 원인이 신체의 내부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가리킨다.<sup>10)</sup> 피보험자의 질병 등 내부적 원인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신체상의 문제도 외래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sup>11)</sup> 외래성은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적 작용이고, 그 작용 자체는 물리적, 화학적 기타의 성질의 것이어도 된다.<sup>12)</sup>

## 2. 관련 판례

### (1) 판례

1) 기존 질병이 있는 피보험자의 선평기 기동 취침중 사망의 경우 -대법원 1991.6.25. 선고 90대2373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조○○이 1987.7.9. 피고와 사이에 주계약 보험금 2,500,000원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 즉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주계약 보험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해보장특약을 한 사실, 위 보험약관에 의하면 위 특약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라고 정의하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조○○이 1987.9.2. 창문이 열린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선평

8) 정상근, 「보험계약법」, 도서출판 좋은땅, 2006, 262쪽.

9)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486쪽.

10)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7판, 박영사, 2015, 801쪽, 최정식, 「보험·해상법」, 삼영사, 2014, 452쪽.

11)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714쪽.

12) 한창희, 「보험법」, 개정3판,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7, 551쪽.

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조○○의 사망이 위 특약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위 망인의 사망 후에 실시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은 (1) 알코올섭취 후 동맥경화증의 악화로 인한 순환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 (2) 폐쇄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다가 질식사 하였을 가능성, (3) 관상동맥의 경련, 심전도계의 병변 등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먼저 위 망인이 잠을 자던 방의 창문이 열려 있었으므로 위 (2)의 질식사가능성은 없고, 다음 위 망인이 위 (1), (3)의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위 망인이 술을 먹은 것은 외인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증상이나 병변 등은 위 보험약관상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망인이 경미하지 않은 외인에 의하여 그와 같은 증상이나 병변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망인이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9퍼센트나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취상태에서는 피부 혈관의 확장과 체온조절기능의 실조현상에 의하여 체열이 방산되고 이러한 체열 방산은 바람에 의하여 촉진되는 것으로서, 위 망인 또한 알코올에 의하여 신체의 제반사가 마비된 상태에서 체온이 하강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을 제3호증(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망인은 더운 날씨에 술에 만취하여 여인숙의 좁은 방 안에서 선풍기를 가까운 곳에 틀어 놓고 런닝과 팬티만을 입은 채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망인이 자던 방의 창문이 열려있어 폐쇄된 공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취상태에서 선풍기바람 때문에 체열의 방산이 급격히 진행된 끝에 저체온에 의한 쇼크로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호흡중추신경 등의 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은 판시 부검결과에서 사망 가능성으로 예시한 3가지 유형에 집착한 탓인지는 몰라도 알콜섭취와 동맥경화증 악화와의 관계, 선풍기 바람과 질식사와의 관계를 따로 떼어서 판시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미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위 망인의 주취상태(알콜섭취)와 선풍기바람 이 두가지 요인을 합하여 이것이 그 사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에 이 사건 특약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라고 정의하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사유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소외 망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만취된 것과 선풍기를 틀고 잔 사유는 모두 외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소외 망인의 술취한 상황을 외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위 보험약관의 해석을 잘못된 소치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소외 망인의 사망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상해사고시 기왕증의 고려방법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애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존재하던 요추 제 2-3번, 제3-4번, 제4-5번간 각 추간판 팽윤 및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경도의 척추 전방 전위 소견, 이 사건 수행제거술 부위의 감염에 의한

골수염으로 증상이 악화된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기왕증의 기여도를 30%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판례의 평가

우리 대법원은 기왕질환이 있는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선풍기를 들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에 상해사망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질병이 있는 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 IV. 독일의 논의

2007년 독일은 보험계약법을 대대적으로 개정<sup>13)</sup>하였다. 동 법에서는 제178조<sup>14)</sup>에서 상해보험의 요건을 규정을 한다. 즉 독일 보험계약법 제178조 제2항 제1문에서 보험사고를 갑자기 외부에서 신체에 작용하는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사고(외부에서 신체에 작용하는 사고와 그로 인한 건강손상)와 동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고결과(직업능력상실, 사망,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구별하여야 한다. 법률의 내용을 반복하는 약관도 약관이지만 내용통제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sup>15)</sup> 독일에서의 상해보험사고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이에 대하여는 이필규·최병규·김은경,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 101쪽 아래 참조.

14) 독일 보험계약법 제178조(보험자의 급부) (1)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상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고발생 시에 합의된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우연하게 건강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존재한다. 우연성은 반대의 입증의 의무까지 추정된다.

15) 이에 대하여는 특히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29쪽 참조.

## 1. 독일의 상해사고의 개념

### (1) 외래성

보험사고의 요건은 외부에서 신체에 작용하는 사고이다. 이 경우에는 건강손상에 직접 작용하는 사건이 문제가 된다. 이때 사고가 외부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스키활주로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의사에 의한 스스로의 동작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상해사고가 된다.<sup>16)</sup>

축구선수가 축구중에 골킥을 하려다가 잘못 디더 근육힘줄파열이 일어난 경우에도 상해사고이다.<sup>17)</sup> 후두에 물이 들어가 질식사하는 경우도 피보험자가 그전에 의식을 잃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해사고이다.<sup>18)</sup>

이점에서 상해사고는 신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가령 이식한 심장판막의 파열)과는 구별되는 것이다.<sup>19)</sup> 보통 행위를 직접 사고 전에 고찰하더라도 법률은 신체에의 직접적인 작용을 요구하지는 않는다.<sup>20)</sup> 즉 직접적 작용은 그로써 충분한 것이지만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피보험자가 외부작용에 대한 정신적 반응에 의하여 신체적 손상을 입는 것도 포함이 된다.<sup>21)</sup> 그런데 이는 항상 쉽게 알기는 어렵다. 인과관계의 연결관계 초기의 것과 그 끝 사이에는 심리적 중간단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체에의 작용의 원인은 면책사유의 판단에서 의미가 있다.<sup>22)</sup> 신체적인 해당성이 행위과정에서 일어난다는 점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신체내부적인 경과가 관여되어도 배제되지 않는다(가령 건강손상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반응).<sup>23)</sup> 물론

16) BGH, r+s 2011, S. 400.

17) OLG München, NJWBR 2012, S. 552.

18) BGH, NJW 2012, S. 1389.

19) OLG Stuttgart, VersR 1987, S. 355.

20) 산절벽에 매달리는 것, BGH, NJW 1962, S. 916. 추위에 얼어죽는 것, OLG Stuttgart, VersR 1997, S. 176.

21) BGH, VersR 1972, S. 582(가령 치아유리창이 튀어나와 심장마비에 걸리는 것). OLG Saarbrücken, r+s 2005, S. 446(웅덩이에 떨어진 후에 얼어죽는 것). Langheid/Wand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2, München, 2011, § 178, Rdn. 86.

22) BGH, NJW 2012, S. 1289(익사로 인한 사망). OLG Stuttgart, VersR 2007, S. 1363(욕조의 질식사).

23) OLG München, VersR 2012, S. 895(잘못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의 흡입). OLG Braunschweig, VersR 1985, S. 823(말벌의 쏘). 진드기에 물리는 것에 대하여는 Abel/Winkens, r+s 2011, S. 47.

외부의 작용은 피보험자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 행해져야 한다.<sup>24)</sup> 미약의 흡입은 의도된 외부적 작용에 해당된다.<sup>25)</sup>

스스로 움직이다가 실수하여 다치는 경우에 부모된 보험사고와 부모되지 않은 자해와의 구분은 어렵다. 전적으로 의도적으로 행위하여 건강손상이 일어난 경우에는 외부에서 신체에 작용하는 사고가 없기 때문에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다.<sup>26)</sup>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척추연골이 손상을 입은 경우가 그러하다.<sup>27)</sup> 피보험자가 춤추다가 또는 자동차에서 내리다가 또는 급히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그러하다.<sup>28)</sup> 그러나 스키를 타나다 놀라 넘어지고 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외부세계와의 신체적 접촉이 있어 신체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모대상이 된다.<sup>29)</sup>

처음에는 의도한 움직이었지만 그 후에 뜻밖의 동력에 의해 발을 헛디더 붙잡으려고 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외부세계가 비정상적이고 의도하지 않게 신체에 작용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한다.<sup>30)</sup> 피보험자가 도약하다가 웅덩이에 넘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sup>31)</sup>

대상의 스스로의 움직임이 없었던 경우로서 스포츠를 하다가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sup>32)</sup> 또는 줄을 당기다가 그 반작용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경우<sup>33)</sup>에는 상해사고가 아니다. 또한 제3자의 뜻하지 않은 반응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움직이게 되어 불행히도 다친 경우에도 상해사고가 아니다.<sup>34)</sup> 피보험자가 주장하기를 갑자기 태양이 비취서 경정맥 절단의 사고가 난 경우에도 상해사고가 아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갖게 되는 인상은 그 자체는 신체적인 작용은 아니기 때문이다.<sup>35)</sup> 즉 상해사

24) OLG Saarbrücken, NJW-RR 2004, S. 177(심장마비 이전 혹은 이후의 뛰어내림).

25) OLG Karlsruhe, ZfS 2005, S. 570. 치료용으로 기침물약의 복용에 대하여는 OLG Stuttgart, NJW-RR 2007, S. 316 참조.

26) BGH, VersR 2009, S. 492; OLG Hamm, VersR 1995, S. 774.

27) NGH, NJW-RR 1989, S. 217.

28) OLG Köln, r+s 2002, S. 482; OLG Düsseldorf, r+s 1999, S. 296.

29) BGH, VersR 2011, S. 1135. 이에 대한 비판적 평석으로는 Kloth, jurisPR-VersR 6/09, Anm. 4.

30) BGH, VersR 2009, S. 492. 땅이 평평하지 않아 움푹러진 경우에 대하여는 OLG Hamm, ZfS 2008, S. 43 참조. 구부리다가 책상 모퉁이에 넘어져서 비장이 피열된 경우에 대하여는 OLG München, VersR 2012, S. 715 참조.

31) OLG Köln, r+s 2007, S. 516.

32) OLG München, VersR 2012, S. 715.

33) OLG Frankfurt a.M. r+s 2009, S. 32.

34) OLG Naumburg, VersR 2013, S. 229.

35) OLG Saarbrücken, ZfS 2013, S. 396.

고는 스스로의 움직임에 대한 뜻하지 않은 경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sup>36)</sup>

내부적 경과 또는 스스로의 움직임은 보통 약관(독일 상해보험약관 2008 제 1.4.조)에 의하여 강한 진력(erhöhte Kraftanstrengung)으로서 상해사고와 동일시된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단순히 일상적인 힘들임으로는 부족하다. 그러한 일상적인 힘쓰는 사전질병이 있을 때에만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약관에서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으므로 자기신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상해사고에 포함이 된다. 볼링, 차에서 내림, 가방을 듬 등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sup>37)</sup> 힘쓰는 것이 강한 것이냐 여부는 해당스포츠의 통상적인 동작경과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일상적으로 행한 것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sup>38)</sup> 따라서 택시운전자가 가방을 들어주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제외된다.<sup>39)</sup>

## (2) 급격성

사고가 갑자기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부보된 손해경과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와 부보된 사고를 구획하게 된다.<sup>40)</sup> ‘갑자기’라는 것은 신체에의 작용이 갑자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 건강손상에 갑자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sup>41)</sup> 그것은 일시적이고 일신과 결부된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양자는 상호 결합되어 있다. ‘갑자기’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짧게 신체에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경우 일분을 다툰다는 의미는 아니고 객관적으로 뜻밖이고 따라서 불가피성의 현상을 말한다.<sup>42)</sup> 해당 피보험자가 그 사건으로 인하여 놀라고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 급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를 피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비난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예견할 수 없었고 불가피하게 일어난 것이다.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심장마비를 일으킨 경우 그것이 일정시간에 걸치는 경우에도 급격성을 인정할

36) Römer/Langheid, Versicherungsvertragsgesetz, 4. Aufl., München, 2014, S. 1169.

37) OLG Saarbrücken, NJW-RR 2002, S. 676.

38) LG Frankfurt a.M. NJW-RR 2010, S. 1621.

39) OLG Hamm, VersR 2011, S. 1136.

40) BGH, VersR 1985, S. 177.

41)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8. Aufl., München, 2010, § 178. Rdn. 16.

42) OLG Frankfurt a.M., r+s 2009, S. 32. Langheid/Wand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2, München, 2011, § 178, Rdn. 77 ff.

수 있다.<sup>43)</sup> 마찬가지로 깊은 곳으로부터 너무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생긴 잠수병 현상도 상해사고이다.<sup>44)</sup>

### (3) 우연성

독일 보험계약법 제178조 제2항 제1문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사고 자체가 아니라 건강손상을 우연히도 입어야 한다.<sup>45)</sup> 이는 그것을 의도한 것도 아니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건강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건강손상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신뢰하는 경우가 있다. 위험한 스포츠종목을 하는 경우에 다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다. 가학적 음란증의 행위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보통 건강손상을 동반하게 된다. 그 경우 피보험자가 손상을 계상하였을지라도 그 구체적인 급부의무를 야기하는 실제사고 여부는 피보험자에게 얼마나 고의성이 있었느냐에 달려있다.<sup>46)</sup>

### (4) 증명책임

보험사고의 존재, 그로 인하여 야기된 건강손상에 대하여는 독일 민사소송법 제286조가 적용된다. 사고와 지속적인 직업능력의 소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독일 민사소송법 제287조가 적용된다.<sup>47)</sup> 사고가 건강손상에 이르게 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및 사고전의 의식상실이 손상의 원인이었는지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가 증명책임을 진다.<sup>48)</sup> 이때 외관증명(Anscheinsbeweis)으로는 충분하지 않다.<sup>49)</sup>

우연한 원인이 보험사고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제기된다. 이 경우에 일부 학자들은 사회보험법의 개념을 사용한다. 여러 개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보험보호를 줄 수 없다는 견해<sup>50)</sup>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를 수긍하는 학자들

43) BGH, VersR 1988, S. 951; OLG Koblenz, VersR 1999, S. 436.

44) OLG Karlsruhe, VersR 1996, S. 364; OLG München, VersR 1983, S. 127.

45) BGH, VersR 1998, S. 1231. OLG München, VersR 2012, S. 715(축구경기중 빨대와 충돌)

46) OLG Saarbrücken, VersR 1997, S. 949; OLG Oldenburg, VersR 1997, S. 1128.

47) BGH, VersR 2009, S. 1213.

48) BGH, NJW-RR 1988, S. 789.

49) OLG Hamm, VersR 2002, S. 883.

은 많지 않다.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보호를 주어야 한다고 한다. 적정한 건강손상 야기가 그러한 경우에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보험자가 현재의 직업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높은 직업능력상실은 기왕질병에 의한 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보험자가 증명하면 그 부분은 면책이 가능하다.<sup>51)</sup>

독일 보험계약법 제178조 제2항 제2문에 의하여 우연성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손상을 야기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은 보통 간접증거(Indizien)가 문제된다. 자살이 추정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우연한 행위과정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technische Möglichkeit)이 우선 간접증거에 속한다. 우연성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동기(가령 유서)가 없어도 사실상 자유의사에 의한 것은 추정된다.<sup>52)53)</sup> 자해의 사정에 대한 자유의 지성의 인정은 사고묘사와 손상의 종류와 범위의 실제 확정사이에서 차별화해서 보아야 한다. 가령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절단의 경우 흉터의 변경<sup>54)</sup> 또는 피보험자위 안전조치의 범위와 시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sup>55)</sup>

## 2. 독일 법제의 평가

독일 법제에서도 보험사고를 위하여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요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와는 달리 우연성에 대하여는 추정이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독일 보험계약법 제178조 제2항). 따라서 우연성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기왕질병과 손해가 경합하는 경우 보험자가 기왕질병의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것이 성공하면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사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자살이나 상해사고에 대하여는 간접증거에 의하여 판단을 한다. 자살에 대한 합리적 가능성이 존재하면 그에 대한 동기기 없어도 자살을 인정한다.

50) Versicherungsrechtshandbuch/Mangen, § 47, Rdn. 29.

51) BGH, NJW-RR 2009, S. 679.

52) OLG Frankfurt a.M. OLG R 2008, S. 712(벤진혼합물을 뿌린 경우). OLG Koblenz r+s 2009, S. 290(기타에 뛰어난 경우).

53) Römer/Langheid, Versicherungsvertragsgesetz, 4. Aufl., München, 2014, S. 1175.

54) OLG Karlsruhe, VersR 1990, S. 967.

55) OLG Köln, VersR 1996, S. 1530.

## V. 분석과 평가

### 1. 기왕질병 감액조항의 유효성

상해보험에서 기왕질병감액조항을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둔 경우 그 약관은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sup>56)</sup>의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유효설<sup>57)</sup>과 무효설<sup>58)</sup>이 대립되어 있다.

### 2. 상해사고가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지 여부

우리 대법원은 고의면책의 경우 그 원인이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어야 면책된다고 보고 있다.<sup>59)</sup> 그러나 상해보험의 사고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원인

56)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564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약관 소정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미 존재하던 기왕중인 심관상동맥경화와 약관 소정의 상해가 겹쳐 사망을 촉진시켰다고 보는 한 위 약관규정이 적용되어 피고로서는 기왕증의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보험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상해보험이 정액보험인지의 여부는 위 약관규정의 적용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기왕증의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을 심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그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거를 추구하고 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에는 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김선정, “상해보험계약상 기왕장해 감액규정이 설명할 중요사항인지 여부,” 월산생명보험 제436호, 2015년 6월호, 38쪽 아래;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장덕조, “2015년도 보험법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2015년 상사판례 회고」, 한국상사판례학회 동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6.2.16., 12쪽 아래 참조 참조

57) 김성태, 전게서, 871쪽;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17, 768쪽.

58) 장덕조, 「보험법」 제4판, 법문사, 2018, 501쪽.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564 판결과 관련하여 약관에 보험금 감액조항이 있으면 그 상해보험이 정액보험인지의 여부는 그 약관규정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시한 것은 납득하기 곤란하며 이 사건 보험이 감액될 수 없는 이유는 실손해와는 무관하게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심의 결론이 옳았다(박기억, 법률신문 제3151호[2003.3.3.], 14면)는 의견이 존재한다.

59)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원심이 인정하는 것처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여 망인에게 1,600cc 가량의 피를 수혈하였다 할지라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고 따라서 수혈 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원고의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들이 그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만으로 피고들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인위적 행위로

이 반드시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것이라고 엄격하게 새겨서는 아니되고 상당인과 관계<sup>60)</sup>로 판단하여야 한다<sup>61)</sup>고 본다.<sup>62)</sup> 상당인과관계는 병존하는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고원인이 병존하는 다른 원인과 대체로 보아 같은 정도로 상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sup>63)</sup> 부분적으로 질병이 가미되어 중한 결과가 되었다라도 사고가 개입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 우연한 사고가 결과에 합리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면 상해사고로 인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령 고혈압으로 인하여 쓰러진 사실, 즉 실족으로 인한 충격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라면 상해사고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sup>64)</sup> 백내장 수술경력 및 난소종양이 있는 90세 모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소지가 있다.<sup>65)</sup> 하지만 채장암처럼 중대질병과 교통사고가 결부된 경우에는 기존질병이 주가 되어 상해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sup>66)</sup> 다만 과거에 기왕증 감염조항이 약관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 그 감염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인한 면책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또한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 62628 판결: 사람이 승용차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리자 그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할 생각으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히 좌회전하여 위 사람을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위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전도된 지점의 도로 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의 음주 상태, 목격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차량 운전자로서는 피해자가 달리던 차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큰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60) 교통사고로 수술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평소 기관지천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판례가 있다(대법원 2005.12.9. 선고 2005다44084 판결). 이 판례에 대하여는 이준교·정찬목, 「판례를 통하여 배우는 보험이론 및 분쟁실무」, 보험연수원, 2017, 344쪽 참조.

6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피보험자가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판례에 대하여는 김명수, 「보험판례개관」, 법문사, 2013, 514쪽 참조.

62) 동지: 한기정, 전게서, 768쪽.

63) 박세민, 「보험법」, 제4판, 박영사, 2017, 963쪽.

64) 이준교·정찬목, 「판례를 통하여 배우는 보험이론 및 분쟁실무」, 보험연수원, 2017, 327쪽 참조.

65) 서울고등법원 2007.4.27. 선고 2006나96152, 96169 판결.

66) 동지의 판결: 대법원 2007.8.24. 선고 2007다29362 판결.

### 3. 우연성의 증명책임

우리의 경우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에 해당한다는 점은 보험금청구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sup>67)</sup>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동 보험계약법 제 178조 제2항에서 상해보험에서 우연성은 반대의 입증이 있기까지 추정된다는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우연성의 증명책임을 보험자에게 지우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up>68)</sup>

### 4. 본 사안의 경우

본 사안의 경우 피보험자는 말기신부전 환자이었다. 그런데 대퇴골 골절을 당하여 치료를 받아가 결국은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왕질병과 상해가 경합하는 경우 보험자가 기왕질병의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것이 성공하면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독일의 기준에 의거하여 보더라도 본 사례의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퇴골 골절이라는 상해사고가 상당인과관계로서 기여하였다. 즉 기왕질병과 관련하여 상해사고기여부분보다도 기왕질병(말기신부전) 부분이 더 크지는 않다고 보아야 한다. 즉 사고의 전체적인 과정을 평가하여 보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인정할 수 있다.

## VI. 맺음말

오늘날 민영보험은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부족분을 국민들이 임의적으

6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김선정, “외래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의 정도,” 『생명보험』 제395호, 2012년 1월호, 43쪽 참조.

68) 김은경, “상해보험에서 우연성에 대한 증명책임,” 『기업법연구』 제32권 제2호, 2018, 75쪽.

로 민영보험을 활용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사회의 기술이 진보하고 복잡하여 짐에 따라 각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였다. 이에 상해보험이 매우 중요한 위험보장 역할을 담당한다. 상해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특징으로 한다. 보험약관에서도 이를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모집종사자들이 상해사고요건으로서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의 개략적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sup>69)</sup> 그런데 일부는 기왕질병이 사고와 결부되어 사망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이를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사고의 기여도를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상해사고가 질병보다도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되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가 반드시 유일하거나 결정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성 여부는 계속하여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에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한 하급심도 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판례와 분쟁조정례를 분류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를 통하여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

69) 이상남, 「보험모집규제론」, 마인드맵, 2017, 188쪽.

## 참고문헌

- 김명수, 「보험관계개관」, 법문사, 2013
- 김선정, “외래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의 정도,” 「생명보험」 제395호, 2012년 1월호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 김은경, “상해보험에서 우연성에 대한 증명책임,” 「기업법연구」 제32권 제2호, 2018
- 박세민, 「보험법」, 제4판, 박영사, 2017
- 보험경영연구회, 「보험론」, 문영사, 2005
- 송옥렬, 「상법강의」 제6판, 홍문사, 2016
-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 유주선, 「보험법」, 청목출판사, 2013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 이성남, 「보험모집규제론」, 마인드맵, 2017
-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 이준교·정찬목, 「판례를 통하여 배우는 보험이론 및 분쟁실무」, 보험연수원, 2017
- 이필규·최병규·김은경,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
- 장덕조, 「보험법」 제4판, 법문사, 2018
- 정상근, 「보험계약법」, 도서출판 좋은땅, 2006
-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7판, 박영사, 2015
- 채이식, 「상법강의(하)」 개정판, 박영사, 2003
-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02
- 최정식, 「보험·해상법」, 삼영사, 2014
-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제9판, 삼영사, 2015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17

한창희, 「보험법」, 개정3판,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7

Beckmann/Matusche-Beckmann, Versicherungsrechts- Handbuch, 3. Aufl., München, 2015

Langheid/Wand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2, München, 2011

Looschelders/Pohlman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Köln, 2010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8. Aufl., München, 2010

Römer/Langheid, Versicherungsvertragsgesetz, 4. Aufl., München, 2014

<Abstract>

##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disease and accidental death**

**Choi, Byeong Gyu**

Today, private insur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mplementing social insurance. There is a limit to the nation's responsibility for the welfare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for the people to arbitrarily prepare the deficit by utilizing the private insurance. As society's technology becomes more advanced and complex today, the risk of accidents increases. In this regard, injury insurance plays a very important role of guarantee. An accident is characterized by sudden, accidental, and extroverted. The Supreme Court believes that in cases of intentional immunity, the cause is the only or decisive cause. However, in order to acknowledge the accidental nature of the accident insurance, it should be judged by a causal relation that it is not strictly inscribed that the cause is necessarily unique or definitive. It is possible to recognize an accident as an accident if there is an accident involving partial illness and serious consequences and if the incident is reasonably affected by the accident. Provided, however, that in the event that an amendment to an existing claim is explicitly agreed upon in the Terms, the amendment itself shall be considered valid. In the case of this review, the insured was a patient with end stage renal failure. However, he was treated with femoral fracture and eventually died. In such cases, it is a question whether it is possible to pay injury death benefit. In the case of Germany, the insurer should prove that the disease is more likely to be affected if the disease or injury is contested, and if it succeeds, the insurer finds it to be an immunity. However, in this cas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femoral fracture contributed to the cause of death as a result of death. In other words, it can be recognized as an insurance accident of injury insurance. Whether or not an accident has occurred should be based on the existence of a causal relationship that can reasonably be recognized. A causal relationship can be recognized if an accident

is recognized as contributing more than disease. In this case, the accident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unique or deterministic. In addition, whether insurers' insolvency will continue to be a problem. There is also a subordinate who has decided to pay injury death benefit even if the rib is broken and recently died during CPR. In order to provid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work on the typology of the accident standard of accident insurance.

**Key Words** : accident insurance, previous illness, suddenness, contingency, exogenism, fracture of femur, endstage renal failure, burden of proof